

제2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이용자

- 가.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(1~5등급)
- 나.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

2. 이용정원

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,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3. 이용자 모집방법

- 가. 인터넷(홈페이지, 블로그, SNS)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.
- 나.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.
- 다.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.
- 라. 기존 방문 계약자의 지인 등 소개 및 전화나 메시지 등 상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- 가.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나.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 - (1)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 - (2)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로 작성한다.
 - (3)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 - (4)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2. 계약목적

- 가.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자사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가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로 한다
(단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·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%는 60%감경, 건강보험료 순위 25~50%는 40%감경,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)

나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(재가 기준)은 아래 표와 같다.
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- 2023년 기준)

다. 이용자(수급자)의 식비, 병원진찰 및 처방, 약값 구입비등 개인적 필요 비용은 이용자(수급자)가 전액 부담한다.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월 한도액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 수급자				0% 부담	
	차상위계층				6% 부담	
	보험료감경대상자				9% 부담	
	일반수급자				15% 부담	

방문요양

(단위:원)

30분이상	60분이상	90분이상	120분이상	150분이상	180분이상	210분이상	240분이상
16,940	24,580	33,120	42,160	49,160	55,350	61,670	68,030

방문목욕

(단위:원)

차량이용(차량 내)	차량이용(가정 내)	차량 미이용
86,480	77,970	48,690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이용자(수급자)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이하 ‘보호자’에 포함)을 지정하여야 하며, 이용자(수급자)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 이용자(수급자)가 급여제공서비스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급여제공서비스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2)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
- 3)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사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나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- 1) 이용자(수급자)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- 1)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) 이용자(수급자)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
- 3) 인적사항, 건강상태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6)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

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

- 1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4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
- 5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6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나. 이용료 등 수납 :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다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: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반환한다.